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□ 펀드명 : 트러스톤TDF2040증권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

변경 사유	변경 전	변경 후
<p>퇴직연금 클래스 가입조건 명확화</p>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① ~ ② (생략)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8. (생략) 9. Cp2클래스 수익증권 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 10. Cp2-E클래스 수익증권 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 중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11. (생략) ④ (생략)</p>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8. (현행과 같음) 9. Cp2클래스 수익증권 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(<u>단,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사전지정 운용제도(디폴트옵션)를 통하여 가입한 경우는 제외</u>) 10. Cp2-E클래스 수익증권 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 중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(<u>단,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사전지정 운용제도(디폴트옵션)를 통하여 가입한 경우는 제외</u>) 11.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</p>	<p>제13조(자산운용지시 등) ① (생략)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③ ~ ④ (생략)</p>	<p>제13조(자산운용지시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<u>한도로 하여</u>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
<p>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</p>	<p>제23조(판매가격)</p> <p>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고객이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<u>제3영업일</u>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 <p>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<u>제4영업일</u>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 <p>③(생략)</p>	<p>제23조(판매가격)</p> <p>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고객이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<u>3영업일</u>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 <p>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<u>4영업일</u>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 <p>③(현행과 같음)</p>
<p>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</p>	<p>제25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</p> <p>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<u>제5영업일</u>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<u>제6영업일</u>)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 <p>②제24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<u>제9영업일</u>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<u>제10영업일</u>)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25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</p> <p>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<u>5영업일</u>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<u>6영업일</u>)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 <p>②제24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<u>9영업일</u>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<u>10영업일</u>)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</p>	<p>제26조(환매연기)</p> <p>① ~ ④ (생략)</p> <p>⑤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1.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</p>	<p>제26조(환매연기)</p> <p>① ~ ④ (생략)</p> <p>⑤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1.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</p>

	<p>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<u>제5영업일</u> 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<u>제6영업일</u>)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</p> <p>2. (생략)</p>	<p>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<u>5영업일</u> 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<u>6영업일</u>)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<p>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</p>	<p>제43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</p> <p>① ~ ④ (생략)</p> <p>⑤ 제4항에 따른 손실 등의 보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<u>제5영업일</u>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⑥ (생략)</p>	<p>제43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</p> <p>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제4항에 따른 손실 등의 보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<u>5영업일</u>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(현행과 같음)</p>
<p>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</p>	<p>제44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p> <p>4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</p>	<p>제44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(<u>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</u>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p> <p>4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(<u>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</u></p>

	<p>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p> <p>② ~ ④(생략)</p> <p>⑤ 제3조제4항제4호 및 제6호의 모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모투자신탁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없이 모투자신탁이 “트러스트글로벌채권증권모투자신탁[채권-재간접형]”, “트러스트중장기증권모투자신탁[채권]” 으로 전환될 수 있다.</p> <p>⑥(생략)</p>	<p><u>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</u>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p> <p>② ~ ④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제3조제4항제4호 및 제6호의 모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모투자신탁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없이 모투자신탁이 “트러스트글로벌채권증권모투자신탁[채권-재간접형]”, “트러스트중장기증권모투자신탁[채권]” 으로 전환될 수 있다. <u>(단, 금융투자업규정 제4-54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.)</u></p> <p>⑥(현행과 같음)</p>
<p>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</p>	<p>제47조(공시 및 보고서 등)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8.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</p> <p>9. 투자신탁이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</p>	<p>제47조(공시 및 보고서 등)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<u>으로서</u>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 <u>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)</u>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</p> <p>9. 투자신탁이 설정하고 1년(<u>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</u>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</p>

	<p>10. (생 략) ③ ~ ⑩ (생 략)</p>	<p>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. (현행과 같음) ③ ~ ⑩ (현행과 같음)</p>
	<p><신 설></p>	<p><u>부 칙</u> 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2년 10월 7일</u> <u>부터 시행한다.</u></p>